

변호사 조영래·윤종현

서울·중구서소문동58의17(명지빌딩1005호)
전화 752-4661~2

86초 662호

항 고 장

피고인 권인숙

서울고등법원 귀중

변호사 조영래·윤종현

서울·중구서소문동58의17(명지빌딩1005호)
전화 752-4661~2

86초 662호

항 고 장

피고인 권 인 숙 (權 仁 淑)

부천시 송내동 진주아파트 비동 201호

변호인 변호사 고영구, 김상철, 박원순, 이돈명, 이상수,

조영래, 조준희, 홍성우, 황인철

항고인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조영래

위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86고합 375 공문서변조 등 피고 사건
에 관하여 위 변호인들이 동원 86초 662호로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하였던 바,
동원 형사 제1부는 1986. 10. 23. 위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
하였고, 위 결정은 같은달 . 위 변호인들 중 변호사 고영구에게 송
달되었으며 항고인은 위 변호사 고영구를 통하여 같은달 25. 위 기각결정을

변호사 조영래·윤종현

서울·중구서소문동58의17(명지빌딩1005호)
전화 752-4661~2

고지받았습니다. 항고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. (나머지 변호인들도 항고인과 마찬가지로 원결정에 불복이나, 이 항고장에 전원의 도장을 날인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항고인 명의로만 이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임.)

항 고 이 유

1. 원결정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그 간 수사과정의 경과에 관하여 판원서를 제출하고 또 공판정에서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이상 재판부가 변호인들 신청의 증거들(문 귀동 등에 대한 검찰수사기록 검증, 문 귀동, 이흥기, 김해성 등에 대한 증인신청)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슨 위법 또는 부당한 증거결정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.

그러나, 위 변호인 신청의 증거들을 통하여 입증하며 하는 피고인의 상고문 피해 주장의 진위 여부와 그 피해정도의 문제가 피고인에 대한

변호사 조영래·윤종현

서울·중구서소문동58의17(명지빌딩1005호)
전화 752-4661~2

형의 양정에 있어서 천양지판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결정적인
 관건이 된다 함은 법률전문가로서는 말할것도 없고 건전한 상식을 갖
 춘 사회일반인이 볼지라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티이고,
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
 하여 신중하고도 적절하게 양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재판부로서는
 마땅히 시간적·기술적 제 제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
 다하여 위 성고문피해주장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보려는
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바든지 인신의 자유
 의 무거움이바든지 하는 말을 들출 것도 없이 심로 자명한 법리이다.

그런데 위 성고문 피해주장의 진위에 관하여는 인천지방검찰청의 수
 사인력이 총동원되다시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, 수십명의 참
 고인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 사실이 있고, 그 결과 피고인
 의 피해주장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것도 아니요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도
 아닌 이른바 「수사결론」이란 것이 발표된 바 있으며, 더욱이 위

변호사 조영래·윤종현

서울·중구서소문동58의17(명지빌딩1005호)
전 화 752-4661~2

「수사결론발표」에 덧붙여 피고인의 피해주장이 전적으로 날조된 것이냐
 는 취지의 「공안당국분석」이란 것이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것은 공
 지의 사실인 것인데, 그런 터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
 내용을 판원서 혹은 법정진술을 통하여 다소 청취하였다하여 위 성
 고문주장의 진위 여부 및 그 피해정도의 점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확
 고한 합리적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신이 아닌 다음
 에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, 설혹 일응의
 심증을 형성하였다 할지라도 위 검찰수사기록을 검증하고 위 문귀동
 등을 증인으로 환문하는 등 증거조사를 거침으로써 그 심증이 더욱 합
 적이며, 소상하며 확고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 함은 불문가지의
 사실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렇다할 시간적 제약이나
 기술적제약도 전혀 없는 터에 위 증거신청을 전부 기각해 버리고 만
 연히 결심을 서두른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적절하고도 신중한 양정을
 위하여 마땅히 취하여야 할 조치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데에 돌아가는

변호사 조영래·윤종현

서울·중구서소문동58의17(명지빌딩1005호)
전화 752-4661~2

것으로서 위법·부당함이 명백하며, 이 점에서 원결정은 그 이유가
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2. 원결정은 가사 위 증거결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

곧바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는 속단할 수 없다고 실시
하고 있다.

그러나, 이 사건에 있어서 재판부가 다른 기록도 아닌 검찰수사
기록검증 등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신청마저도 상식에 반하여 기각
해 버린 이유는 성고문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행정당국의 노력에
접촉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밖에는 달리
설명할 방도가 없음이 명백하다. 그렇다면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
이 중대한 사건에서 어떻게 위 재판부로부터 법률과 양심에 입각한
공평한 재판, 행정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초연한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
할 수 있겠는가?

이 점에서도 원결정은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.

변호사 조영래·윤종현

서울·중구서소문동58의17(명지빌딩1005호)
전화 752-4661~2

1986. 10. 27.

위 항고인 변호사 조영래

서울고등법원 귀중